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1가단508582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홍성필, 김말금, 최단비, 이선영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화

담당변호사 김세현

변론 종결2022. 7. 8.

판결 선고2022. 8. 26.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지분에 관하여 2016. 10. 4.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8,517,65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517,6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은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소180126호로 양수금 21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7. 7. "C은 주식회사 D에 2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5. 7. 2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1. 11. 2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D의 C에 대한 위 양수금채권 및 이에 따른 판결원리금채권을 양수하였고, 위 계약이전결정은 2011. 11. 24. E언론과 F언론에 각 공고되었으며, C은 2011. 12. 23.부터 2014. 8. 11.경까지 원고에게 위 양수금의 일부를 분할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C이 2014. 8. 11. 이후 위 위 양수금의 변제를 지체함에 따라 종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3. 16. 의정부지방법원 2016타채366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3. 21.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으며, 2016. 4. 28. C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C에 대하여 2021. 1. 20. 현재 원금 871,557원, 이자 7,573,937원 합계 8,445,488원의 원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마. 피고와 C의 모 G가 사망하여 상속재산으로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남겼는데, C은 2016. 10. 4. 피고와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통하여 자신의 상속지분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7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3.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H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1. 채권최고액 4,8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사. C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친 2016. 10. 4.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1 내지 8, 을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전에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채권이 이미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양수금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양수금채권은 종전 판결의 확정일인 2005. 7. 27.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C은 2011. 12. 23.부터 2014. 8. 11.경까지 위 양수금 중 일부를 분할변제한 사실, 원고는 2014. 8. 11. 이후 C이 위 양수금의 변제를 지체함에 따라 종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3. 16. 의정부지방법원 2016타채366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3. 21.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종전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 C의 임의 변제로 인하여 최종 변제일인 2014. 8. 11.경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로부터 다시 10년이 경과하기 전 원고가 2016. 3. 1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6. 3. 21. 확정됨으로써 다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C의 사해의사는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양수금의 원금이 소액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이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것처럼 C에게

2016. 4. 2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은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존재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는 C이 2011.경부터 해외에 체류하면서 관광가이드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무자력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을2 내지 5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피고가 혼자 부담한 것이고, 원고의 양수금 원금이 소액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취소의 범위 및 가액배상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협의 후 이 사건 부동산에 H은행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가액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일 현재 가액은 공동주택공시가격에 따른 5,800만 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C의 상속지분 2/7에 해당하는 공동담보가액은 16,571,428원(= 5,800만 원 × 2/7, 원 미만 버림)이 된다.

한편 원고는 C에 대하여 2021. 1. 20. 현재 원금 871,557원, 이자 7,573,937원 합계 8,445,488원의 원리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2022. 7. 8.)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원리금채권은 8,517,658원(= 8,445,488원 + 원금 871,557원에 대하여 2021. 1. 21.부터 2022. 7. 8.까지 종전 판결의 지연손해금율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6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72,17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2/7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동담보가액과 원고의 원리금채권 중 적은 금액인 8,517,65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반환으로 8,517,658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김익환

별지